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77684 판결 [구상금연대채무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199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77684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강대형, 신동

일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정재윤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9. 3. 2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B가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① 2003. 9. 26.

2,465,000,000원, ② 2014. 5. 28. 152,000,000원을 각 보증원금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 및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C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할 수 있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B가 2016. 3. 28.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B를 대위하여 2016. 9. 30. 주식회사 E에 1,469,014,960원, 2016. 11. 14. 주식회사 F에 156,814,345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 C,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17. 2. 3.자 2017차전6092호로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946,010원 및 그 중 1,469,014,96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156,814,345원에 대하여는 2016. 11. 14.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C,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 1) 주식회사 B가 2016. 3. 28.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주식회사 B 및 그 연대보증인인 C, D는 위 시점에 원고에 대해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후인 2016. 4. 21. 주식회사 B의 영업을 양수하여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B의 상호 중 주요한 부분인 'G'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위 사전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는 주식회사 B, C, D가 위와 같은 사전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C, D의 재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B와 별개의 회사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도 위 사전구상금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위 사전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 1) 먼저 상호의 계속사용에 따른 상법 제42조 제1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4. 21. 설립된 사실 및 주식회사 B와 상호 중 'G'라는 명칭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주식회사 B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다음으로 법인격 남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F은행,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I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의 아들인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1. 11. 주금 3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주금을 송금한 J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이 바로 입금된 사실, 2016. 11. 4. 위와 같이 J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K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D가 H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와 같은 주금 외에 피고가 주식회사 B, C, D와 연관되어 있거나, 주식회사 B, C, D가 보유한 자산이 피고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주식회사 B의 거래상대방 등이 일부 중복되어 주식회사 B의 영업상 권리 등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이 추단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주식회사 B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가가 불가능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이전만으로 주식회사 B, C, D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주금이 입금된 시점은 피고의 설립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B, C, D가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